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납부등록 매뉴얼

1. 인지세란?

재산상의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1.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 「전기공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등이 인지세 부과대상이며 도급문서에는 하도급 하는 계약서도 포함됨

2.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납부 등록시스템 도입 배경

- 기존의 전자수입인지는 A4크기의 종이출력물 형태로 이를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나 수수료 납부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매, 출력하여 스캔본 첨부까지의 절차상 과정이 필요하며 또, 구매한 전자수입인지의 미소인 처리로 인한 여러 부정사용의 가능성이 제기됨으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도입하고 시행시기는 '17.7월로 정하였습니다.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14.12.30, 시행-'17.7.1.)]에서 제안한 개념으로, 과세대상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수입인지

3. 인지세 부과액

인지세는 계약금액(부가세 포함)을 기준입니다.

** 해당 금액 기준 씨브이네트 50% 협력회사 50% 납부합니다.

(기존 납부비율과 변동 없음)

서면계약은 기존과 동일하게 1부당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당사 100% 협력사 100%)

총 계약금액 (부가세 포함)	인지세액 (원)	당사 (50%)	협력회사 (50%)
1000만원 이하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1000만원초과 3000만원이하	20,000	10,000	10,000
3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40,000	20,000	20,000
5000만원초과 1억이하	70,000	35,000	35,000
1억초과 10억이하	150,000	75,000	75,000
10억 초과	350,000 (이후납부없음)	175,000	175,000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 www.e-revenuestamp.or.kr

-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구매/발급 가능하지만 구매내역 서비스(변경발급, 추가구매), Q&A 등을 이용하시려면 반드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구매절차는 [수입인지가격확인 → 구매요청서작성 → 결제하기 → 발급완료] 순으로 진행 됩니다.

※ 전자수입인지 도움말

<https://www.edoc-revenuestamp.or.kr/serviceinfo/getUseGuidance.do>

- 발급절차

1.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구매 가능)
2. 구매 선택
3. 구매요청서 작성
 - . 인지세액 확인
구매할 인지세액을 아는 경우 선택 (구매자가 구매금액을 직접 입력하여 발급)
구매금액 입력 (인지세액 中 협력사 50% 부담분만 입력)
 - . 구매자 정보입력 (회원가입을 한 경우 자동입력)
 - . 거래정보 입력
계약번호, 계약명, 계약체결일, 계약금액 (부가세포함) 기재
 - . 계약서 (과세대상 문서) 등록
계약서 파일 첨부 (당사에서 발송한 eepss 전자계약서를 다운받으신 후 첨부)
전자수입인지 위치 선택 : 네번째 선택 (좌측하단)
 - . 결제 및 발급 (PDF파일 다운로드)
4. 당사 전자계약사이트 (eepss) 등록 방법
 - . 당사에서 발송한 전자계약서 클릭
 - . 하단의 "인지세납부현황" 선택
 - . "인지세납부정보신규등록하기" 선택
 - . 인지세 고유번호 (납부확인증의 16자리) 입력 후 중복체크
 - . 다운로드 받은 PDF 파일 추가 후 저장